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[기획재정국 세무2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1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 제74조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본 개정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사항(2020. 12. 29.)을 반영하여 체납 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조례에 명시된 기준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조례」 일부개정

○ 주민세 개인사업자·법인균등분 + 주민세 재산분 ⇒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

2) 성실납부자 기준세목 폐지(주민세 재산분)에 따른 조례 정비 (안 제4조)

○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는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*기준세목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·법인균등분 세목까지 포함하게 되어 성실납부자 요건 완화 및 대상자가 크게 확대됨으로 기준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자 함.

*기준세목 : 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(소유분), 구 주민세 재산분

다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이 2020. 12. 29.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세목을 폐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 요건 완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, 타당성이 인정됨.

붙임 1. 관련 법령 1부.

지방세징수법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74호, 2020.12.8., 타법개정]

제105조(채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·승인·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.

지방세징수법시행령

[시행 2021. 4. 27] [대통령령 제31647호, 2021. 4. 27, 일부개정]

제93조(채납처분 유예)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채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(제1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채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채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(제1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) 이내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6. 26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가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
 - 나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
 - 다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(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)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처분이 유예된 채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26.>
- ④ 채납처분 유예의 신청·통지·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,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 6. 26.>

지방세법

[시행 2021. 7. 8] [법률 제18294호, 2021. 7. 8, 일부개정]
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

1. 1., 2018. 12. 31., 2020. 12. 29.>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4. “사업소”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5. “사업주”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.
6. “사업소 연면적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.
7. “종업원의 급여총액”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, 임금,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8. “종업원”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,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